대학직장민방위대편성및운영규정

제정 2021. 9. 1.
개정 2024. 5.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민방위기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성남시 민방위 업무지침 등에 근거하여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이하 “본교”라 한다)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민방위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예비군 부대는 본교 직장 민방위대(이하 “민방위대”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적용) 본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19조(민방위대 편성) 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1항 2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 1항 1호에 근거하여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직장 민방위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장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

제4조(지휘관리) 본교 민방위대는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지휘 관리를 받는다.

제5조(민방위대의 편제 및 지휘권의 대리) ① 본교 민방위대에는 대장 1명과, 부(副)대장 1명 그리고 필요한 단위대를 두며 부(副)대장과 단위대장은 민방위 대장이 임명한다.

② 본교 민방위대는 직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부 분대, 의료·구호·소수방 분대, 방호·복구분대 등 3개 분대로 편성한다.

③ 민방위 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장이 행사하고, 부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편제 순서에 따라 간부대원이 행사한다.

제6조(민방위 대장) 본교 민방위대장은 “총장”이다. 다만, 민방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총장은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군대대장”에게 민방위대장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7조(민방위대원 대상)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는 편성 의무자와 대학에 재직 중인 사람 중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조직 · 편성한다.

①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학 재직 중인 교직원 중 남성

② 대학 교직원 중에서 편성 의무자가 아닌 만 17세 이상 사람 중 지원한 사람

③ 민방위기본법으로 정한 “법정 제외자”(군인, 예비군, 학생 등), 편성권자(시장, 구청장, 읍·면·동장 등)에 의한 “직권 제외자”는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한다.

제8조(자원관리) 민방위대의 민방위 자원 관리는 민방위대장이 성남시장(수정구청장)의

지휘·관리를 받아 시행한다.

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편성절차 등) ③항에 근거하여 본교에 임용·퇴직한 남성 교직원 중 민방위 편성 대상자는 14일 이내에 수정구청장에게 신고한다.

1. 본교 임용된 자 중에서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는 민방위대장이 관련사항을 확인 후 민방위대에 직권 편성한다.
2. 본교에서는 매월 1, 16일을 기준으로 임용·퇴직한 사람 중 민방위 편성 대상자를 수정구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민방위 대장은 상반기는 1월 5일까지 후반기는 7월 5일까지 민방위 대원 연명부를 작성하여 수정구청장에게 송부한다.

③ 민방위 대장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본교 민방위대에 조직·편성된 대원에 대해 다음해 1월 10일까지 민방위 대원에게 임무고지를 하며, 연중 전입자 중 편성 대상자에 대해서도 민방위대 편성과 동시에 임무를 고지한다.

제3장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9조(시기 및 장소)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성남시장(수정구청장) 통제 하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①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를 중심으로 상반기(3 ~ 6월)는 본교육을 하반기(8 ~ 11월)는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② 민방위 교육훈련은 성남시 민방위 교육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전국의 체험훈련장 등에서 실시한다.

③ 사이버 교육은 성남시(수정구청) 안내 및 통제에 따라 인터넷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에 접속 수강한다.

제10조(대상 및 시간)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은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민방위대 육성, 생활안전 역량 제고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① 민방위 대장은 연간 4시간 집합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② 민방위 대원 중 1 ~ 4년차는 연간 4시간 집합, 참여형 교육을 실시한다.

③ 민방위 대원 중 5년차 이상은 연간 1시간 비상소집훈련 또는 참여형 또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제11조(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① 성남시장(수정구청장) 책임 하 민방위 대원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한다.

② 교육훈련 통지서는 교육훈련일 7일전까지 전달하며, 보충훈련 통지서는 훈련 48시간 이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한다..

③ 교육훈련 통지서는 본인 동의 하 전자우편 및 문자 전송을 통한 전자통지를 하며, 전자통지 수신 불가 대원에게는 민방위 대장이 본인에게 직접 통지서를 교부한다.

제12조(훈련결과 유지) 민방위대장은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에 접속 훈련결과를 유지하며, 소집교육은 “민방위 교육대”에서 통보받아 교육훈련 결과를 유지한다.

제13조(교육훈련 내용)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범위 내에서 필요한 아래의 교육을 실시한다.

①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1. 민방위 제도 : 민방위 정의·이해, 민방위대 편성·교육, 민방위대 평상시 임무, 민방위대 전시 임무, 민방위대 동원
2. 민방위 단위대별 임무 : 상황전파, 대피통제, 인명구조, 소화대, 지원대, 화생방대
3. 전시, 재난 시 상황별 행동요령 : 비상사태 시, 화생방 사태 시, 테러발생 시, 풍수해 발생 시, 대설 발생 시, 지진 발생 시, 화재 발생 시, 화학물질 사고 시, 응급처치 행동요령

② 유형별 지역 맞춤형 교육 등

제4장 민방위 훈련

제14조(목표) ①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민방위 대원이 함께 참여하는 실전 중심의 맞춤형 훈련을 실시한다.

② 실제 위급 상황에 대비한 국민 행동요령 숙달 및 생활 밀착형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제15조(훈련통제 및 결과 처리) ① 정부 통제 전국단위 재난대비 훈련 연 4회, 성남시 통제 재난대비 훈련 연 2회, 경기도 통제 주민 대피훈련 연 2회를 실시한다.

② 민방위 대장은 정부·경기도·성남시 통제 하 민방위 훈련 시 대학 실정에 맞는 훈련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1주전 홍보하며, 민방위 대원 및 교직원·학생의 훈련 참여를 독려한다.

③ 민방위 대장은 훈련 종료 5근무일 이내에 훈련결과를 작성하여 성남시(수정구청)에 보고한다. 단, 훈련 시 식별된 미흡 및 보완시킬 사항은 차기훈련 시 반영한다.

제5장 민방위·화생방 장비 및 시설관리

제16조(민방위·화생방 장비) 민방위 사태, 화생방 상황에서 수행되는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① 민방위 장비 : 민방위대에서는 초기사태 수습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필수품목을 반드시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1. 전자메가폰(2개), 지휘용 앰프(1개), 응급처치 세트(2개), 환자용 들것(2개), 휴대용 조명등(4개), 교통 신호봉(2개)
2. 소모품(건전지, 응급처치세트 구성품)의 내구 연한을 고려하여 교체 계획 수립 및 교체 수량 확보

② 화생방 장비 : 민방위대에서는 화생방 상황 시 주민 대피 유도 및 긴급구호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필수품목을 반드시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1. 방독면 : 본교 재직 중인 교직원 인원을 고려한 수량 확보(개인 1개)

2. 보호의(2벌), 탐지지(2개), 오염표지판(8세트), 휴대용 제독기(6대), 제독용액(12통)

③ 민방위·화생방 장비 및 물자에 대한 정기점검은 성남시(수정구청) 통제 하 또는 민방위 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실시하여 성남시(수정구청)에 통보한다.

④ 민방위 대장은 매년 12월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장비 등의 내구연한 초과 및 질정 분류를 통해 식별된 폐기 품목을 확인 처리하며, 처리절차는 성남시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7조(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유사시 교직원 및 학생, 지역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를 목적으로 한 대피시설과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최소의 음용 및 생활용수를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비상급수시설을 지정·관리한다.

① 본교에서는 유사시 대학 건물 7개동의 지하시설을 이용 교직원 및 학생 등을 대피시킨다.

② 범석관 지하 2층·3층은 지역주민을 위한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수정구 지정, 1996.10.26)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사시 지역주민에게 제공한다.

1. 대피시설에는 대피소 안내표지판, 방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확보한다.

③ 운동장(농구장)에 위치한 지하 심정을 민방위 공공용 비상급수시설(수정구 지정, 2017.2.20)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사 시 지역주민에게 제공한다.

④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 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은 성남시(수정구청) 통제 하 또는 민방위 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실시하여 성남시(수정구청)에 통보한다.

제18조(장비·물자 확보, 감독) ① 민방위 대장은 예비군 중기·연도계획 수립 및 추진에 준하여 민방위·화생방 장비 및 물자 확보를 위한 중기·연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② 매년 12월 예비군 중기·연도계획 심의 시 민방위·화생방 관련 중기·연도계획을 병행 심의하며, 승인된 장비·물자는 대학 본부에서 구매하여 민방위대에 지급한다.

③ 확보된 장비·물자에 대한 감독은 대학본부(재단)에서 실시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대학본부 협조사항) 민방위 업무는 다음의 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한다.

① 사무처는 예비군 대대장 요청 시 임용·퇴직 교직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② 사무처는 비상 대피시설·급수시설을 관리 및 유지한다. (개정 2024.5.29.)

제20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민방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과 성남시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